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698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 제고 등	4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16

I. 개요

1. 조은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69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은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2. 10.
- (3) 회 부 일 : 2026. 2. 11.

나. 제안이유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 고령화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노후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92.6시간이고 월평균 임금은 117만원으로 2022년 기준 209시간 근무 최저임금 191만 4,44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직률이 41%에 달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체계를 확보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2)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 (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32조의3).
- (4) 인권교육 대상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서 수급자와 그 보호자로 확대함(안 제35조의3).
- (5)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정 보수 기준 준수 여부를 장기요양급여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35조의6 신설).
- (6)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3호 및 제6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7)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등의 평가 결과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37조제1항제9호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 제고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노인인구·지역특성 외에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그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노인인구, 지역특성 및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사항에 장기요양요원의 인력수급과 장기요양급여의 지역별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노인인</u>	④ ----- <u>노인인</u>

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생략)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u>처우</u> 및 <u>규모</u>에 관한 사항 <신설> 5. (생략) ② (생략)	구, 지역특성 및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 ----- ----- -----.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생략) 4. <u>노인인구, 지역특성 및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실태조사)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처우</u>, <u>규모 및 인력수급</u>----- 5. <u>장기요양급여의 지역별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1)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 강화 등

□ ‘장기요양기관’¹⁾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²⁾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³⁾ 및 재가노인복지시설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3)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중 시설급여기관은 6,361개소, 재가급여기관은 20,831개소가 있는데, 이때 전체 장기요양기관 대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을 살펴보면, 시설급여기관은 2.1%(135개소), 재가급여기관은 0.8%(193개소)임.

-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현행법 제48조5)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요양원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음.

<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현황 >

2025.11.30.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시설급여	재가급여
계	29,924	6,361	23,563
지자체	328	135	193
법인	3,946	1,407	2,539
개인	25,650	4,819	20,831

※ 주) 전국 지자체(행복e음)로부터 연계받은 자료로 장기요양기관은 지자체, 법인, 개인으로 구분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장기요양기관 설립·운영이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질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우려가 있어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⁶⁾.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관련하여 2025년 시설급여 기관 정기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급여 기관의 평균점수가 88.7점으로 가장 높았고, A등급(54.5%) 비율이 전체 시설급여 기관의 A등급(26.0%) 비율의 2배에 이르는바, 일반적으로 공공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이 높을 것으로 보임.

< 설립주체별 시설급여 기관 정기평가 결과(2025년) >

'26. 3. 25.기준 (단위: 점, 개소, %)

구분	평균점수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계	83.5	5,406(100)	1,403(26.0)	2,132(39.4)	1,124(20.8)	381(7.0)	366(6.8)
개인	82.4	3,999(100)	846(21.2)	1,633(40.8)	915(22.9)	321(8.0)	284(7.1)
법인	86.3	1,278(100)	489(38.3)	462(36.2)	194(15.2)	59(4.6)	74(5.8)
지방자치단체	88.7	123(100)	67(54.5)	33(26.8)	15(12.2)	1(0.8)	7(5.7)
기타	78.3	6(100)	1(16.7)	4(66.7)	-	-	1(16.7)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재구성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3.9.5. (공동주최 :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최종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p.23-24

“공적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인프라를 완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달체계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장기요양서비스가 이윤 창출을 위한 하나의 사업 수단이 되었으며 공적 체계보다는 민간기관에 의존성이 심화되었다. 공단의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수는 25,384개소(재가 19,621개소, 시설 5,763개소)이며, 이 중에서 민간기관은 25,140개소로서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99%를 차지하고, 국·공립기관은 244개소로 1% 미만에 불과하다. 특히 민간기관 중 21,244개소(83.7%)가 개인 설립기관이므로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무색하게 만든다. 민간기관은 국가 재정에 의존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위하여 인건비 등의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므로 노인 돌봄의 질 제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공공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은 민간기관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켜 재정 투입의 기대효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돌봄 공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25.2.4. (주최 : 국회의원 박희승, 주관 :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p.6, 47

“거대자본이 장기요양보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서비스 품질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성과 사회적 목적을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고령층 및 수급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대자본의 유입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장은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로 운영되면서 한계를 보였으며, 이에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적 사회보험의 일환= 시작되었으나, 당초 인프라를 완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로 운영해오면서 여러 한계를 보여옴

- 장기요양보험은 정부의 재정과 규제에 의해 관리되나, 민간기관은 기본적으로 이윤 창출을 추구하기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사업수단으로 치부하며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게 됨.”

또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돌봄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음.⁷⁾

□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그 설립을 지원할 때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추가하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에 관하여는 기존 설립된 민간기관의 역할에 대한 우려, 기존 기관의 경영 악화 문제 등이 제기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이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7)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22. 4. 20.

8)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한의사협회 의견 참고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366호, 24.7.30.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사된 바 있는데,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당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충족률이 80% 미만이라는 점⁹⁾ 등을 감안하여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거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대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¹⁰⁾하도록 의결된 바 있음.

- 둘째, 현행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공단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설치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¹¹⁾, 개정안에 따른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에 공단이 설립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포함되어 그 확충 계획이 마련되는 경우 현행법 제48조의 내용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¹²⁾.

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시설급여기관)의 정원 대비 현원은 약 79%임. 참고로, 노인요양시설은 시설급여기관의 약 75%를 차지하고, 나머지 25%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임.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실태조사 사항 추가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¹³⁾에서는 2027년 장기요양 수급자가 14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약 75.5만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여 요양보호사 전망치(68.0만 명) 대비 약 7.5만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¹⁴⁾.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연구용역¹⁵⁾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106.2만명('23년 기준)에서 20년 뒤 262만명('43년 기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고, 요양보호사 1명이 1.5~1.9명을 돌보는 현재의 수준('23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년 뒤 약 99만명('43년 기준)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이에 장기요양급여 수요 전망을 충족할 수 있는 인력 등의 공급을 위한 면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2) 참고로, 지난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직접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808호 백성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04407호 전해숙의원 대표발의) 심사 당시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주변의 민간이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의 반대가 우려된다는 의견,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직접 설치 목적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는 MOU 체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고, 결과적으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3) 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202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4) 참고로,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는 약 123만명, 요양보호사는 약 66.4만명이고, 전체 장기요양요원은 약 80만명임.

15)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변화의 주요 부문별 전망과 대응 방향 연구, 2025.3. p.71~85

□ 현행법 제6조의2¹⁶⁾는 3년마다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수급자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처우·규모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늘어나는 장기요양급여 수요 대비 인력 부족 우려 등을 감안하여 그 실태조사 사항에 장기요양요원의 인력수급(안 제6조의2제1항제4호)과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제1항제5호)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항들을 장기요양사업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장기요양요원의 인력수급’은 현행 실태조사 사항 중 하나인 ‘장기요양요원의 규모’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일 장기요양요원의 인력수급“추계”를 실태조사 사항으로 하려는 것이라면 실태조사는 일반적으로 사업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태조사 사항으로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¹⁷⁾, 실태조사가 아닌 별도의 추계 근거를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7) 다만, 일부 입법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망 등을 실태조사 사항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2. 분야별·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보건의료기본법」¹⁸⁾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와 별개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안 제4조 관련)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성 및 장기요양급여 공공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함.
- (안 제6조제1항제4호 관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추가할 필요성에 동의함.
- (안 제6조의2제1항 관련) 안 제6조의2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현행 실태조사 항목에 ‘장기요양요원의 규모’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각 급여 제공기관별 직원 수 현황은 이미 파악 중이므로 별도의 법률 개정 실익이 부족함. 또한, 안 제6조의2제1항

18)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의2(수급추계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3.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제5와 관련하여 지역별 신뢰성·대표성 있는 데이터 산출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다수의 표본 확보가 필요하므로, 한정된 예산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안 제4조 관련)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당 조항은 향후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및 감독 강화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추가적인 관리·감독 강화는 기관운영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로 직결되며, 또한 공공성 강화의 책임을 민간기관 규제로 전가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함.
- (안 제6조제1항제4호 관련) 국·공립 기관 확충을 국가계획에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기관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음.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은 민간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국·공립 기관 확충이 급격히 추진될 경우, 민간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기존 기관의 경영 악화, 지역 내 공급 과잉 및 수급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에 앞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함.

□ 대한의사협회

- 장기요양서비스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바,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운영할 경우 지역별 수요·공급 현실과 민간기관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공공성 제고는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확충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민간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및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 제고 등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를 전제로 한 정책 수단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함.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넣어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실시하는 인권교육 대상에 수급자의 보호자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35조의3제2항).
- 그리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적정 보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동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그 준수 여부를 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5조의6 신설 및 제54조제2항).
- 또한, 공단이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기존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외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추가하고, 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장기요양사업 수행의 예시로서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를 “장기요양급여 등”의 관리·평가로 함(안 제54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3회 이상 연속하여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32조의3 및 제37조제1항제9호 신설)
-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율

(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을 정할 때 급여유형별 제공방식과 필요 인력·장비·시설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인건비 지출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시정명령을 규정하며, 그 시정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36조의2 제3호, 제38조제6항 및 제6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장기요양요원의 <u>처우에 관한 사항</u>	3. ----- <u>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 방안</u>
<u><신설></u>	4. (생략)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u>6년</u> 으로 한다.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 ---- <u>5년</u> -----.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생략)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u>수급자</u> 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 ----- - <u>수급자와 그 보호자</u>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신 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제35조의6(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에 관한 기준(이하 “적정 보수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보수 기준 준수 여부를 제54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의2(시정명령)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

-----.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신설>

② ~ ⑨ (생략)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

1. ~ 8. (현행과 같음)

9. 제54조에 따른 평가 결과 3회 이상 연속하여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요양급여 유형별 제
공방식과 필요 인력·장비·시설 등
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

⑦·⑧ (현행과 같음)

제54조(장기요양급여 등의 관리·평가)

① -----장기
요양급여 내용과 장기요양요원의 처
우를-----
-----.

② -----

-----제공하였는지와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적정 보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u>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1. 2. (생략) ② (생략) 제69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4의2. (생략) 5. ~ 9. (생략) ②·③ (생략)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 <u>장기요양급여 등의</u>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과태료)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6조의2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5.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37조제1항제9호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

나. 검토의견

1)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 현행법 제35조의3제2항19)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인권교육의 대상에 수급자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도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체계를 확보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개정안의 제안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발생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인권교육을 통해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 특히,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²⁰⁾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은 지난 1년간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비난·고함·욕설(15.6%), 꼬집기·밀치기·주먹질 등 신체적 부당행위(10.5%), 성희롱 등 성적 부당행위(6.5%) 등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응답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 제35조의3을 신설한 법률 제1544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2018.3.13. 개정, 2018.9.14. 시행)의 취지 및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취지가 아닌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수급자에 대한 학대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²¹⁾

2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2026.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1) 만일 개정안의 취지가 수급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실시되는 인권교육을 보호자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2018년 2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이유에서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인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급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²²⁾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에 관한 인권교육은 현행법 제35조의4제3항²³⁾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 안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²⁴⁾.

2) 적정 보수 기준 마련, 평가에의 반영 및 평가제도 등 강화

(1) 적정 보수 기준 마련

□ 현행법령²⁵⁾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급여제공시간 또는 장기요양등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24)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급여이용설명회나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및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 등을 설명하고 있어 이와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제39조(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급 및 급여제공일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되, 1년간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할 ‘인건비 지출비율’²⁶⁾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인건비 지출비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관련한 요구사항 1순위는 임금수준 향상이라는 응답이 8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참고로, 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임금은 137.3만원으로 나타났음²⁷⁾.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재가급여

- 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나. 방문목욕 :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다.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라. 단기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마.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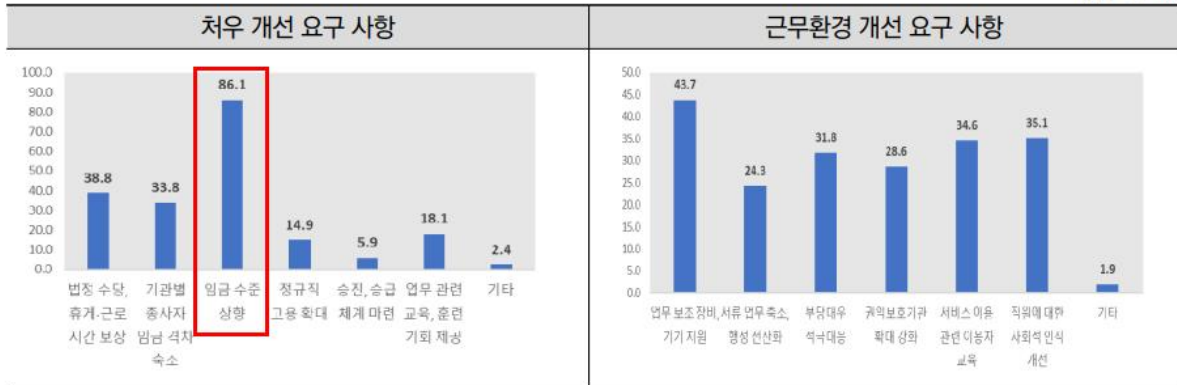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2.6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2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6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9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7.0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7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2

27) 동 실태조사에 따른 월평균 근무시간은 99.2시간으로 나타남.

<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요구사항 >

[그림 7-78] 요원의 정책개선 요구사항

(단위: %)



주: 처우 개선 요구 사항과 근무환경 개선 요구 사항은 1순위+2순위로 산출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2026.8.)

□ 이에 안 제35조의6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동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이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국가가 장기요양요원의 임금과 관련하여 적정 수준의 보수를 정하도록 하는 경우 그 수준을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결정된 이후 그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²⁸⁾

28) 다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는 국가가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을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 지출 비율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266호,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사된 바 있으나, 사적 계약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그 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의결된 바 있음.

(2)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적정 보수 기준 준수 여부 반영 등

□ 공단은 현행법 제54조²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내용을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수급자의 알 권리 및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공단은 3년 주기 정기평가와 함께 수시평가(정기평가 결과 최하위기관,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 대상)를 실시하고 있음.
- 공단은 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평가 결과 상위 기관 또는 지난 평가 대비 현저히 개선된 기관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지급³⁰⁾하며, 일부 지표가 미흡한 기관의 경우 세부내용을 관계 행

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③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정기관(관할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54조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안 제36조의 2제1항에 따른 적정 보수 기준의 준수 여부를 공단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 안 제37조제1항제9호는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3회 이상 연속으로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정 보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등에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적정 보수 기준의 준수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장기요양기관 단체³¹⁾는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3회 이상 연속으로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는 안 제37조제1항제9호와 관련하여 이는 평가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재적 기능을 신설하는 것으로 과도한 제재라는 점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만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수 있다.

31)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단축

□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19. 12월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6년) 및 지정갱신제³²⁾가 도입되었는데,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갱신 신청을 하면 ①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 ②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사업운영계획, 수급자 인권보호, 직원교육 등), ③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회계·재정운영 준수 등), ④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근로계약, 급여 적정성 및 직원 복지), ⑤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치게 되고, 갱신심사 결과 부적격 기관은 갱신 부적격 내용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따른 갱신 심사 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심사³³⁾하는데, 안 제32조의3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지정 갱신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적정 보수 기준 준수 여부 등 평가에 반영되는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유인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됨.

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 다만,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제도는 해당 조문이 2019년 12월 시행되었고 그 유효기간이 6년임을 고려하면 동 제도는 사실상 2025년 12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³⁴⁾, 제도의 운영 성과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유효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당초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규정한 것은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³⁵⁾가 3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두 차례의 정기평가를 거친 뒤 개선 가능성이 부족한 장기요양기관을 퇴출시키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는 점³⁶⁾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주기와의 연계 측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4) 개정 당시 부칙 제7조는 기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의 유효기간 기산을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하도록 규정하였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제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았거나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기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1307호,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18.1.8.) 검토보고서

3) 인건비 지출비율 결정 시 고려사항 추가 및 인건비 지출비율 위반 시 제재 등

□ 안 제38조제6항은 인건비 지출비율을 정할 때 급여유형별 제공방식과 필요 인력·장비·시설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같이 검토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급여유형별 제공방식과 필요 인력·장비·시설 등을 고려하여 정하므로 현재도 이를 고려하여 인건비 지출비율이 결정되고 있다는 설명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요양급여” 유형별 제공방식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³⁷⁾”이므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36조의2제3호는 인건비 지출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안 제69조제1항제4호의2는 그 시정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 지출비율의 준수를 도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인건비 지출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법 제36조의2제2호³⁸⁾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3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기준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라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규정³⁹⁾하고 있어 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그에 따라 시정명령이 가능하므로 현행법에 따라서도 인건비 지출비율 위반 시 시정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은 인건비 지출비율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6⁴⁰⁾에 따라 시정명령 미이행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과잉제재가 될 수 있으므로⁴¹⁾ 추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3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③ 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은 별표 2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한다.

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41)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9.8.)’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의무위반 등에 대해서만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병과하도록 정비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안 제6조제1항제5호 관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추가할 필요성에 동의함.
- (안 제32조의3 관련) '25년 12월부터 최초로 지정 유효기간(6년)이 도래함에 따라 '25년 9월부터 지정 갱신심사가 시작되었으며, 향후 6년간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지정 갱신여부를 1회 심사하게 됨. 제도의 최초 도입에 따른 시행을 거치지 않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미 6년의 유효기간에 따라 갱신심사를 받은 기관에 대한 차별취급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지정갱신제도 시행 이후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협회, 지자체, 건보공단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유효기간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35조의3 관련)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인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에 대한 조문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과 무관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권익보호 사항은 현행법 제35조의4제3항에 명시되어

이와 같은 과태료-영업정지를 병과한 법률에 대하여 정비방안으로서는 그 제재 대상이 되는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다.

의무위반의 유형	개선방안
1.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	과태료
2. 인적·물적 시설요건, 준수 의무, 명령위반 등 영업 관련 중요 의무 위반	영업정지
3.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의무위반 등	과태료와 영업정지

있음.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교육실시 대상 추가는 교육 실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35조의6 관련) 장기요양제도는 사회보험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을 기관에게 지급하며, 보수를 직접 보조하지 않음.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급여비용 내에서 종사자와의 사적계약을 통해 보수를 지급하고 있어 법률로 적정 보수 기준을 정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안 제36조의2제3호 관련)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인건비 계약은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 간 사적계약인 점을 고려할 때 인건비 지출비율 위반 시 직접적인 제재처분 규정 도입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안 제37조제1항제9호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지정 취소는 목적을 달리하고, 다른 지정취소 사례와 비교하면 과도한 행정 처분으로 보이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서 최근 6년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2회)를 반영하며, 최하위등급을 받으면 심층심사군으로서 갱신 부적격이 가능하므로 지정취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38조 관련) 현재도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 유형별로 필요한 인력운용비와 관리운영비를 고려하여 산정되고 있으므로, 급여 유형별 제공방식, 필요 인력·장비·시설 등이 이미 고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음.
- (안 제54조 관련) 제1항의 경우 현행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중

사자 채우와 관련한 평가지표 및 기준을 이미 반영하고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높지 않고, 제2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수준 향상이 목적이므로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평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안 제60조제1항 관련) 현재 공단에서 급여 제공내용 확인, 관리·평가 및 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가입자 및 관계기관 등에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그 외 자료를 요청할 필요성이 없음.
- (안 제69조제1항 관련)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인건비 계약은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 간 사적 계약인 점을 고려할 때 인건비 지출비율 위반 시 직접적인 제재 처분 규정 도입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안 제32조의3 관련)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5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이제 막 정착되고 있는 단계로, 지정갱신 절차는 지정 유효기간 6년의 제도 안착을 전제로 설계된바, 지정 유효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조정할 경우 행정 혼선과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의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6년의 지정 유효기간을 일정기간 유지 후 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유효기간의 변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보임.
- (안 제35조의6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포괄수가제’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고, 장기요양 사업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민간 제공체제로 운영되어 기관의 장이 소속 종사자와 임금·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임. 따라서 안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직종별 적정 보수 기준을 제시한다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급여내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목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안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안 제36조의2제3호 관련) 장기요양요원의 임금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사적계약 및 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행 제36조의2제2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무회계기준에서 인건비지출 비율 준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을 통해 얻는 실익이 없음.
- (안 제37조제1항제9호 관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심사 시, 심사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기 반영하고 있어 해당 개정 조항이 적용될 경우 이중적 제재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안 제38조제6항 관련) 현행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 지출 비율은 장기요양급여유형별 제공방식 등을 고려하여 고시에서

단일 수가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얻을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안 제54조제2항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급여내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목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안 제60조제1항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은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고, 현행 제60조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내용을 공단이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61조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조사의 범위로 재무회계에 관련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으로 공단이 행정조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개정으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더불어, 현행 ‘장기요양급여’를 ‘장기요양급여 등’으로 변경할 경우 적용대상과 범위에 대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안 제32조의3 관련) 장기요양기관은 3년마다 평가를 받고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평가준비로 평가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정임. 지정갱신을 6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기관 운영에 어려움은 물론, 시설운영의 불확실성

확대로 어르신 서비스 질저하 및 장기요양 인프라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반대함.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행정력과 비용 낭비임.

- (안 제35조의3 관련) 수급자 인권교육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의무교육 대상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호자의 교육참여를 기관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행정·실무 부담 증가 우려와 교육참여 강제성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안 제35조의6 관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나, 수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 재정 보전 방안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기관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것임.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수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경우, 사실상 준강제적 임금 통제로 작용하여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안 제36조의2제3호 관련) 인건비 지출 비율은 기관 유형, 지역여건, 운영 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일률적 기준 적용 후 미준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한 경영 구조 차이를 위법 행위로 간주하는 것으로, 행정처분 남용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재정 지원 없는 의무비율 설정은 사실상 규제 강화에 해당함.
- (안 제37조제1항제9호 관련) 이는 평가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재적 기능을 신설하는 것으로, 3회 최하위등급을 사유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이며, 지정취소는 곧 수급자의 서비스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 장기요양요원 보수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재정지원이나 수가·보상체계 개선 없이 보수 기준만 제시하고 평가에까지 반영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에 부담을 전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 체계 마련이 전제되지 않는 보수 기준 설정에는 반대함.
- 아울러, 지정 유효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경우 지정·평가 절차가 빈번해져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중장기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운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현장 수용성을 고려하여 현행 유효기간 유지가 타당함.
- 끝으로 인권교육 대상을 보호자까지 확대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표준 프로그램, 운영체계 및 이수관리 기준 등 이행 기반과 함께 관련 수가 또는 별도 재정지원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503